학폭 절차 길잡이 근거 대조표

길잡이의 각 단계 안내가 어느 법령과 가이드북 내용에 근거하는지 정리한 표입니다.

대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Open API, 2026. 10. 31. 조회, 학교폭력예방법은 2026. 6. 2. 시행 현행본), 「2026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https://claude.ai/artifact/JLnL3ubiW447M1zejU4LxM

1. 단계별 안내와 근거

#	단계	길잡이 안내 요지	법령 근거	가이드북 쪽
1	**신고·접수**	누구나 학교·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고,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알린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23
2	**분리·긴급보호**	피해학생이 반대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분리한다. 분리 기간은 최대 7일(주말·공휴일 포함)이며,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긴급보호를 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52~53
3	**사안조사**	학교가 최초 확인서를 받고, 사안에 따라 전담조사관이 추가 확인서를 받는다. 확인서는 학생이 육하원칙에 따라 직접 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39, 44, 149
4	**학교장 자체해결**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며, 그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75
5	**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학생과 보호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관련학생 조치 1~9호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92, 103, 110
6	**조치 통보·이행**	조치를 거부·회피하면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조치마다 삭제 시기가 다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121~124
7	**행정심판**	피해 측과 관련 측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한다. 통보서 송달 전에는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 행정심판법 제27조	129, 132
8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다.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집행정지 시 피해 측 의견을 듣는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135, 137

가이드북 쪽수는 배포된 PDF 파일의 쪽 번호 기준입니다.

2. '심의위원회가 살펴보는 다섯 가지' 질문의 근거

근거	내용

시행령 제19조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해 정한다.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	기본 판단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0~4점으로 판정해 조치를 정한다. (가이드북 213~214쪽)
가이드북 부록 '판단요소 확인 시 참고 사항'	조사 때 기준별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한 표. 길잡이 질문은 이 항목을 학부모·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꾼 것이다. (가이드북 156쪽) • 고의성: 폭력행위 전 관계와 마찰, 사전계획, 거부 의사가 있었는데도 했는지, 주변의 만류에도 지속했는지 • 반성 정도: 신고 이전 사과, 조사·심의 성실 참여, 잘못 인정 정도, 재발 방지 의지, 추가 갈등·보복 여부 • 화해 정도: 사과·관계회복, 손해배상·분쟁조정, 피해학생의 처벌 의사와 화해 의지

3. 길잡이에 반영한 판례

판결문 원문(엘박스 제공 PDF)과 대조했습니다. 세 판결 모두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판결	다툰 쪽·결론	법원이 판단한 내용	길잡이 반영 위치
인천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구합50878	관련학생 측, 청구 기각	화장실 불법촬영 사안에서 심의위원회가 심각성 4점, 지속성 0점(1회성 단일 사안)으로 나눠 평가한 판단에 하자가 없다고 봄. 처분 이후의 합의·처벌불원서만으로 그 전의 화해 정도 판정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봄.	관련 측 '심각성' 질문, 심의위원회 단계 할 일
광주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5구합30481	관련학생 측, 청구 기각	행정심판에서 1회성과 합의를 이유로 전학이 출석정지로 변경됐으나, 법원은 심각성 4점·고의성 4점·반성 정도 3점 평가를 수긍함. 지속성과 화해 정도를 0점으로 보더라도 11점으로 출석정지 구간이라고 봄.	관련 측 '화해 정도' 질문
대전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5구합200516	피해학생 측, 처분 취소	신체폭력과 단체대화방 조롱·모욕을 종합하면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적어도 '보통(2점)' 이상이라고 봄. 심각성은 진단서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중단 요구 뒤에도 계속한 행위는 고의성을 낮게 볼 수 없다고 봄. 필통 장난은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았고, 신고되지 않은 행위까지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봄.	피해 측 '심각성'·'고의성' 질문, 사안조사·심의위원회·조치 통보 단계 할 일

4. 검증 방법

- 법령 원문은 VS Code에서 Claude Code로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를 연결해 불러왔고, 길잡이 근거 문구 12개를 원문과 자동 대조했습니다. 1차 대조에서 확인 문구 4개가 원문 표현과 달라 원문 기준으로 고쳐 다시 대조했고, 12개 모두 일치했습니다.
- 불러온 조문 원문은 길잡이 각 단계의 '조문 원문 보기'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인증키는 페이지와 결과 파일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 분리 기간, 불복 기간, 자체해결 요건 등 숫자와 요건은 2026년도 가이드북과 다시 대조했습니다.
- 마감일 계산은 받은 날 다음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로 계산하며, 예시(2026. 10. 1. → 2026. 12. 30.)를 코드로 검산했습니다.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화면에 밝혔습니다.
-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길잡이에 넣지 않았습니다. 입력 내용은 저장·전송하지 않습니다.